

#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 안내문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신설·보수 비용과 공동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1. 지원근거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15조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재지원할 수 없음.

### 2. 지원대상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14조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3. 지원범위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14조

-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
-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 정자 등 주민 휴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승강기 전면교체 및 유지보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방수 목적의 지붕공사 포함) 및 외부 도색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 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

## 2 지원기준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별표]

###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국민주택85㎡이하)	세대별 기준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①국민주택규모 단지로서 사용검사 후 20년 미만 의 단지, ②국민주택규모 이상 단지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최대 2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최대 3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최대 4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최대 4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최대 5천만원
①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의 단지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최대 2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최대 3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최대 4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최대 4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최대 5천만원

### 2. 대상별 지원기준

- 단지 내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 최대한도 2천만원
- 공동주택의 승강기 전면 교체 : 최대한도 3천만원
- 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 전면 교체 : 최대한도 5천만원
- 비 고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방수 목적의 지붕공사 포함) 및 외벽 도색”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사업의 경우 신청 단지는 공동주택 증축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건축 구조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행위허가 포함)를 득하여야 함.
3. 국민주택 규모 단지로서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된 주택단지의 경우 지원비율 100분의 80(최대한도 5천만원)까지 지원
4. “제3호 대상별 지원기준”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한도 범위에서 100% 지원할 수 있음.
5. 임대주택 단지는 총 사업비의 50%(최대한도 5천만원)까지 지원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인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3 지원신청시 필요서류

#### 1.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소요사업비 산출기초(공사견적서, 설계내역서)[서식제공]
-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및 동의서[서식제공])
- 공동명의통장(앞면, 잔액표시 부분) - 단체직인사용, 자부담 확보 확인

### 4 유의사항

#### 1. 보조금 지원 신청 시

- 지원대상사업은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를 준수하여야 함.
- 의무관리단지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소요사업비의 산정은 건설공사표준품셈, 물가정보, 일위대가, 견적가격(품셈에 의한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 <https://www.losims.go.kr/>) 회원 가입(단체 등록)
  - 2024년부터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를 통해 수행사업계획 등록,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관리, 정산 보고 등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일체 자료를 등록 관리를 하여야 함.

#### 2.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3. 사업자 선정 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단, 5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 계약 가능)
- 소규모단지 공동주택인 경우
  - 총사업비 22,000천원 이상(부가세포함) : 민간 계약 대행 요청서를 제출 시, 우리 시가 직접 입찰(경쟁입찰) 후 낙찰자 결정(단, 자부담 50%이상 수의계약 가능)
  - 총사업비 22,000천원 미만(부가세포함)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4. 착수 신고 시

-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 간의 도급계약서(설계도서 및 내역서 포함) 및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서 제출

#### 5. 보조금 청구 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요청

# 5

## 업무흐름도

